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편 드 명	BNK튼튼배당장기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-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-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-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
효 력 발 생 일	2023년 05월 09일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4.24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4.24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3.04.24 기준으로 업데이트
주요투자위험	문구 조정	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	-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

		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	가격을 적용하여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제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제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제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	-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용어 변경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<u>대차대조표</u>	- <u>재무상태표</u>

[요약정보]
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4.24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4.24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3.04.24 기준으로 업데이트
주요투자위험	문구 조정	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	-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

		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	부터 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제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제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제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	-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4영업일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3.05.09: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,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,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-	- 2023.04.24 기준으로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,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가. 투자 대상 ① ~ ② (생략) ③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: 집합투자업자는 --- (생략) --- 있습니다. <u>- <신설></u>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(1)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 ① (생략) ② 채권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	가. 투자 대상 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: 집합투자업자는 --- (생략) --- 있습니다. <u>-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(1)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 ① (현행과 동일) ② 채권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또는 한국주

	<p><u>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</u>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③ <u>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u></p> <p>④ ~ ⑧ (생략)</p> <p>⑨ <u>증권의 대여</u> <주석 추가></p> <p>⑩ <u>증권의 차입</u> <주석 추가></p> <p>⑪ ~ ⑫ (생략)</p> <p>나. 투자 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(1)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이 투자신탁 ~ 있습니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---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</u></p>	<p>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③ <u>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u></p> <p>④ ~ ⑧ (현행과 동일)</p> <p>⑨ <u>증권의 대여</u> 주2) <u>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어를 진행할 수 있음</u></p> <p>1. <u>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</u></p> <p>2. <u>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</u></p> <p>⑩ <u>증권의 차입</u> 주3) <u>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</u></p> <p>⑪ ~ ⑫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투자 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(1)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이 투자신탁 ~ 있습니다.</p> 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---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</u></p>
--	--	--

		<p>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(이하 생략)---</p> <p>③ ~ ⑧ (생략)</p>	<p>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(이하 현행과 동일)---</p> <p>③ ~ ⑧ (현행과 동일)</p>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	<p>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</p>	<p>가. ~ 나. (생략)</p> <p>다. 기타 투자위험</p> <p>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- <위험 추가>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</p>	<p>가. ~ 나. (현행과 동일)</p> <p>다. 기타 투자위험</p> <p>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- 증권대차거래 위험: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</p>

		은 <u>20.59%</u> 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2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결산일 : <u>2022.03.25</u>) (이하 생략)	은 <u>17.2086%</u> 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2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결산일 : <u>2023.03.25</u>) (이하 현행과 동일)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규약 신설 반영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)	가. 매입 (1) ~ (2) (생략) 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-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(나)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-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(다) (생략) (4) ~ (5) (생략) 나. 환매 (1) (생략) 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-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나)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-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3) ~ (4) (생략) (5) <신설>	가. 매입 (1) ~ (2) (현행과 동일) 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-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(나)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-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(다) (현행과 동일) (4) ~ (5) (현행과 동일) 나. 환매 (1) (현행과 동일) 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-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나)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-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3) ~ (4) (현행과 동일) (5) <u>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</u> <u>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</u>

		<p>(5) (생략) (6) (생략) (7) (생략) (8) (생략) 다. (생략)</p>	<p>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금전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(6) (현행과 동일) (7) (현행과 동일) (8) (현행과 동일) (9) (현행과 동일) 다. (현행과 동일)</p>
12.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 을 그 공고·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 <p>나. (생략)</p>	<p>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 을 그 공고·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 <p>나. (현행과 동일)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<p>(1) ~ (2) (생략) 가. (생략)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- <신설></p>	<p>(1) ~ (2) (현행과 동일) 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<u>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 - ※ 기타비용은 <u>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,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(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)을 포함합니다. 단,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u> - <u>예탁원결제보수, 채권평가보수, 부동산감정평가보수, 감사보수, 펀드평가보수, 지수사용료 등</u> ※ <u>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.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u> - <u>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,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, 장외 파</u></p>

			<p>생상품매매수수료, 현금 중개수수료, 대차 또는 대주, Repo 거래 중개수수료, 해외자산(주식, 채권, 선물, 장외파생,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) 등</p> <p>*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기타비용, 증권거래비용, 금융비용 내역</p>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문구 조정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가. 이익배분</p> <p>-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<u>당해 수익증권을</u> 매수합니다.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 (이하 생략) 나. (생략)</p>	<p>가. 이익배분</p> <p>-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지급일의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 기준가격으로 당해 <u>종류</u>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 나. (현행과 동일)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-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4.24 기준으로 업데이트
1. 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<p>가. 요약재무정보</p> <p>- <항목 추가></p>	<p>가. 요약재무정보</p> <p>- 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, <주식의 매매회전을></p>
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-	- 2023.04.24 기준으로 업데이트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(2023. 04. 03 실행)	<p>가. 신탁회사(신탁업자)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주요업무</p> <p>1) 주요업무 (생략)</p> <p>2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</p> <p>[의무]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</p> <p>▸ 투자설명서가 법령·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/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/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</p>	<p>가. 신탁회사(신탁업자)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주요업무</p> <p>1) 주요업무 (현행과 동일)</p> <p>2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</p> <p>[의무] ① ~ 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</p> <p>▸ 투자설명서가 법령·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/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/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</p>

		<p>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 (이하 생략)</p> <p>나. 일반사무관리회사 (1)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<u>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</u></p> <p>- 주소 및 연락처: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, 22층 ☎ 02-2168-0400</u></p> <p>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www.shinhanaitas.com</p> <p>(2) (생략)</p> <p>다. ~ 라. (생략)</p>	<p>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/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일반사무관리회사 (1)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<u>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</u></p> <p>- 주소 및 연락처: <u>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☎ 02-2168-0400</u></p> <p>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www.shinhanfundpartners.com</p> <p>(2) (현행과 동일)</p> <p>다. ~ 라. (현행과 동일)</p>
--	--	---	---
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</p>	<p>-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 ▶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)</p> <p>-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 ▶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	<p>-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 ▶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다만, <u>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)</p> <p>-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 ▶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지난 후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		<p>▶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 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.</p>	<p>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▶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 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.</p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	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(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</u>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 <p>(이하 생략)</p> <p>나. 수시공시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수시 공시</p>	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(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수시공시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수시 공시</p>

	<p>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</p> <p>9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</p> <p>10. (생략)</p> <p>(3) (생략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</p> <p>1. ~ 7. (현행과 동일)</p> <p>8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<u>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</p> <p>9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<u>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</p> <p>10. (현행과 동일)</p> <p>(3) (현행과 동일)</p>
--	--	---

<끝>.